

# 總力大特輯

## 中國의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

### 1. 背景

重工業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纖維工業등과 같은 輕工業조차도 中·日戰爭과 계속된 人民解放戰에 의해 破壞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貧民國中에 하나로 시작된 中國의 經濟建設은 20년 내지 30년이라고 말해지는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안고, 2000年을 앞두고 농업·공업·과학·군사기술 등 4가지의 現代化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4인방의 좌익편향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술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못했다.

하지만 軍事技術을 中心으로 첨단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초음속전투기를 개발·생산하였으며, 미사일 장비의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장거리 로켓트는 그 발사능력에 있어 日本을 앞지르고 있으며, 미국과 통신위성 발사제약을 맺고 상업위성발 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상술한 4가지의 現代化를 위하여 2000년까지 농업은 年평균 5~6%, 공업은 약 8%의 成長率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民生用 產業技術의 낙후와 產業의 現代化를 위한 資本의 不足은 決定的인 難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技術과 資本의 不足에 對應하기 위하여 中國은 1978년부터 開放政策을 追進하면서 技術移轉과 資本導入에 대한 環境整備에 努力을 쏟아왔다.

즉, 기술이전에 관한 法規와 制度의 整備, 稅制·金融 등의 資金面에서의 造成, 기술이전시스템에 관한 정

비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1981년부터의 第6次 5개년계획에 따른 工業生産性增加 중에서 技術改善과 經營管理의 合理化에 의한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第6次 5個年計劃期間중 후반기 3년동안에 도입한 기술은 3,000件에 이른다.

### 2. 關係法令

이들 關係法令 중에서 重要한 것들을 다음에 게재한다.

- 對外經濟貿易仲裁委員會  
중재절차 감정 규칙 (1956년 3월 31일 公布)
- 中外合併企業法 (1979년 7월 8일 公布)
- 外國企業所得稅法 (1981년 12월 1일 公布)
- 勞우하우 사용료의 所得稅  
減免에 관한 감정 규정 (1982년 12월 13일 公布)
- 商標法 (1983년 3월 1일 公布)
- 專利法 (1983년 3월 12일 公布)
- 設의 경제계약법 (1985년 3월 21일 公布)
- 技術도입계약관리(條例) (1985년 5월 24일 公布)
- 技術도입계약인가규칙 (1986년 10월 1일 公布)
- 외자기법법 (1986년 4월 12일 公布)
- 외국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1986년 10월 11일 公布)

그러나 이밖에 각종 經濟特區 등이 각각의 事情에 따라 規定을 만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契約의 상황도 달라지므로, 이 점에 관해서도 주의할 技術일 需要가 있다.

또한 각종 계약에 관해서는 이들 法規 뿐 만아니라 需要에 따라 각종 모델폼을 만들어 公表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重要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 예로는 「中外合併企業契約書」 「中外合併企業定款」 「技術導入契約」 등이 있다.

이들 보편 제6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1980년경부터 활발하게 이들 法令이 整備되어 왔음이 명백한 것 을 알 수 있다.

### 3. 特許法의 目的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國은 社會主義國家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特許法을 시행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 결과 諸外國으로부터 特許出願이 쇄도하였는데 8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出願件數를 보면 日本이 1,729件임에 비하여 제2위인 미국은 1,235件이었다.

그런데 86년에는 미국의 출원은 1,507건으로 증가하

였으나 日本의 경우는 1,327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日本 出願의 감소추세는 우선 당면한 중국과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日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국에 출원한다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제품수출만으로는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쨌든 技術移轉은 불가피하리라는 점이다. 더구나 円高의 進行에 따라서 해외생산기지를 신흥공업국(NICS)에서 ASEAN으로 옮기려는 움직임 속에서 中國을 生産基地로서 재평가하는 기운이 생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된다면 잃든 중등간에 中國에로의 特許出願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中國에서는 省力化技術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꽤 적은 편이다. 이전에는 中國은 최첨단기술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현상태와 매치되는 기술쪽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점에 대한 이해만 이루어지려면 中國은 기술의 첨단성에 대해 그다지 요구하지 않게끔 되었다.

또한 中國은 이미 西獨을 제치고 세계 제4위의 鐵鋼生産國이 되었다. 그러나 國民1人當 생산량으로 계산해 본다면 미국·소련·서독 등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人當 年間 500kg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금세기말에 예상되는 人口 12億 5千 4萬名에 대해 6억 2천만~6억 3천만톤의 생산량이 필요하게 되며, 현재의 세계전체생산량에 가까운 생산설비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의 이와 같은 방대한 철강수요를 제품수출만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으며, 플랜트수출에 의해서 조차도 困難할 것이다(물론 예를 들면 의약 등 특정상품에 관해서는 제품수출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미국 국방성이 2,010년까지는 세계에서 2, 3위의 경제대국이 되리라 예측하고 있는 中國市場의 방대함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응책 강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歐美企業은 하드웨어에서의 열세를 보강하여 중국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수단으로서 기술이전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교가 없는 韓國 역시 현상태에서 단순한 무역거래에 의한다면 한국측이 불리한 점이 많으며, 經濟協力關係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래에도 무역이 商談이 이루어지면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만

큼, 미국과 서독간의 競爭態가 되었다. 이것은 中國側이 의도적으로 서로 競爭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製品輸入·플랜트수입·아니면 기술이전 등의 경합이 붙게 되어, 이 결과에 따라 중국 무역에 얼마만큼의 세어가 얻어지는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일례로 일부 분야에 있어서 外國企業과 技術提携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제3자로부터의 동일기종에 관한 수입은 인정해주지 않는 政策이 나오게 된다.

#### 4. 技術移轉의 形態

技術移轉은 기술원조계약, 合併企業의 設立 및 直接投資 등의 각종 형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外資節約의 의미도 있으므로 중국측에서 무엇보다도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기술원조계약이다. 이러한 경향은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건수의 추이에서도 명백하다.

특히 제7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85년에는 기술이전에 관해 중요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表 1>

年度	81	82	83	84	85	86
플랜트설비	11	29	66	77	188	192
기술라이센스	37	34	85	138	291	305

1月—「기술이전에 관한 잠정규정」公布. 국내의 기술이전에 관한 有償義務 여부

3月—「과학기술체제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결정」 채택, 기술을 상품으로 규정.

「섭외경제계약법」 공포. 섭외경제계약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증.

4月—특허법 시행

5月—北京에서 전국적 규모의 기술교역회를 개최, 각지에 파급.

「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를 公布.

10月—「기술도입계약인가규칙」을 公布.

기술도입의 기준·계약사항·비밀유지 등의 의무, 인가절차 등에 관해 明文化.

이에 따라 關聯法은 일단 體系를 정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 技術導入의 目的과 重點分野

中國에 있어서 技術導入의 目的은 「기계전자공업기

술 개조시행 조례」중에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다.

즉, 「기계와 전자공업의 기술개조」에 관한 目標은

① 제품의 질적향상, 모델변화를 가속화하며, 적극적으로 국제규격을 채용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과 효율을 제고하여, 주요제품이 10년에서 15년으로 先進經濟諸國의 70년대 또는 80년대 초기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② 판매에 적합하고 수요에 걸맞는 제품의 종류와 생산량을 늘려 중요한 핵심제품의 국산화에 노력하여 생산의 발전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人民의 物質·文化生活의 需要를 높임으로서 기계와 전자제품의 수출을 확대한다.

(이하 생략 「기계전자공업기술개조시행조례 제2조 제1호 제2호」)

그리고 이와 같은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國外の 先進的 技術을 적극적으로 利用한다. 이는 현단계에 있어서 기계와 전자공업제품의 제조레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方法인 것이다.

대개 기술도입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有利하며, 더구나 자신들의 自力更正能力의 增強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기술도입은 통일적으로 企圖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 導入前에는 반드시 주도 면밀한 調査研究와 技術經濟論證을 行하여, 기술·생산·관리 등의 각 방면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연구소 및 설계회사를 선택하여 도입작업을 이어나가게 한다. 도입플랜에 대한 결정과 동시에 로트생산의 조직과 국산화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술도입에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는 인원을 조직하여 소화하고 그것을 장악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生産力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有關기관은 감독을 강화하여 그 기술이 가능한 한 빨리 기술개조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작용을 발휘하도록 한다.」(同 第29條)

86년의 제7차 5개년계획에서의 기술도입에 관한 중점분야는, 중국국가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이하와 같다.

- i) 이미 도입된 프로젝트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
- ii) 공업발전의 당면 취약점으로 되어 있는 원재료, 장치의 생산기술
- iii) 경공업 및 방직공업의 신제품개발, 전기제품의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技術과 設備
- iv) 製品의 品質向上을 위한 품질관리·규격·제량·검사측정에 이용되는 기술과 설비
- v) 제품의 수출확대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vi) 신기술과 신재료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

또한, 이밖에 「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에는

- vii) 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것.
  - viii) 안전조업에 도움을 줄 것.
  - ix) 경영관리의 改善에 도움을 줄 것.
  - x) 과학기술수준의 向上에 도움을 줄 것.
- 등이 열거되어 있다(동조례 제3조).

노우하우의 로열티에 관해서는 각종 소득세의 감면 조치가 있는데, 그 대상은 이하와 같다. 이것은 곧 中國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분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i) 중요한 첨단 기계·전기설비의 생산기술
- ii) 원자력 기술
- iii) 대규모 집적회로의 생산기술
- iv) 광집적, 마이크로파 반도체 및 마이크로파 집적회로의 생산기술 및 마이크로파 전자관의 제조기술
- v) 초고속 컴퓨터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조기술
- vi) 광통신기술
- vii) 원거리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 viii) 석탄의 액화, 가스화 및 종합이용기술(노우하우 로열티의 소득세감면에 관한 잠정규정 제1조 제5항) 또한 기술도입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 ① 특허권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의 이전 또는 라이선스
  - ② 도면·기술자료·기술규범 등의 형태로 공여되는 생산공정·조정법·제품설계·품질관리 및 경영관리 등에 관한 기술의 노우하우
  - ③ 기술서어비스
- 등이다. (技術導入契約管理條例 第2條)

## 6. 技術導入契約의 節次

技術導入契約이 發效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① 우선 도입해야 할 項目의 內容과 實施計劃의 概要를 보여주는 項目提案書를 作成한다. 일반적으로는 도입기업측에서 작성하는데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設計院이나 諮詢公司에 작성을 委託한다.

항목제안서가 주관부문에 의하여 심사인가받은 뒤, 도입기업은 실행가능성 검토에 대한 報告書作成을 위한 준비활동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해외시찰, 기술교류 등이 포함된다. 단, 이 단계에서는 외국기업과 구속성이 있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② 이어서 도입계획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모든 자료

에서 전면적, 구체적으로 분석한 실행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한다. 항목제안서를 제출한 단체가 보고서 작성을 끝내면 계획주관부문이 이를 심사한다. 실행가능성 검토 보고가 심사·인가되면 비로소 그 項目은 正式로 기술도입계획에 着手되는 것이다.

③ 그뒤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商談이 행해진다. 실제로 상담은 실행가능성 검토가 종료되기 전부터 開始되는 수도 종종 있으나, 契約의 調印은 실행가능성 검토 報告의 認可後에 비로소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商談은 기술도입 단체의 위탁을 받은 대외무역공사, 投資公司, 工業公司 혹은 기타 技術貿易公司가 실시한다. 기술도입의 소화흡수·응용·생산 등은 도입 단체가 행하나, 商務上의 지불·통관·운수·보험 등의 업무는 계약에 조인한 公司가 책임을 진다.

④ 調印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그 受權機關의 審査認可를 얻어야 한다.

이 認可申請은 「기술도입계약심사인가규칙」에 의해 도입계약의 中國側 조인단체가, 조인후 30日以內에 해야 한다. 심사인가기관은 신청을 수리하고나서 60日以內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약이 인가되면, 대외무역부의 일련번호를 붙인 「기술도입인가증서」가 中國側 조인단체에 발급된다. 이 시점에서 기술도입계약이 정식으로 發效되는 것이다.

## 7. 契約內容

기술도입의 契約에 있어서는 계약서 중에 이하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도입기술의 내용·범위 및 필요한 설명. 그중에서 特許 및 商標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明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② 到達豫想의 技術目標 및 各 目標 實現의 期限 및 措置

③ 代價의 구성 및 支拂方法(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 제5조)

特許에 관계된 것은 中國에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대상기술이 中國에서 특허제도가 채용되기 이전의 것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中國以外的 국가에서 취득한 特許明細書가 要求될 것이다. 이것은 中國이 外國特許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술은 노우하우 취급을 하는데 노우하우의 評價는 어려운 것이며, 특허가 있으면 노우하우로서도 그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급에 따른다.

商標導入에 관해서는 中國의 대외경제무역센터가 편집한 텍스트인 「技術導入契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中國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상표를 함께 사들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국제시장의 상황과 제품의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中國製品을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공여측은 자신이 공여기술의 適法的 保有者임을 보증하고 또한 供與技術이 完全하고 하자가 없으며 有效하여 계약이 정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 제6조)고 되어 있다. 이 「자신이 供與技術의 適法的 保有者임을 保證」하려면, 中國에서 特許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方法이 될 것이다.

또한 契約中에 不當한 制限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동조례 제9조)

i) 받아들이는 측에게 기술도입과 무관한 부대조건의 수납을 요구하는 일. 이는 불필요한 기술·기술서비스·원재료·설비 또는 제품의 구입을 포함한다.

ii) 받아들이는 측이 다른 공급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원재료, 부품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

iii) 받아들이는 측에 의한 도입기술의 발전 및 개량을 제한하는 일.

iv) 받아들이는 측이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유사기술 또는 이와 경합되는 동종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

v) 쌍방의 개량기술의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않은 것.

vi) 받아들이는 측이 도입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일.

vii) 받아들이는 측의 판매루트 또는 수출시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

viii) 받아들이는 측이 계약기간만료후 계속해서 도입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ix) 받아들이는 측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또는 효력을 상실한 특허에 관한 댓가의 지불 또는 의무보증을 요구하는 일.

이들 條項에 담겨진 內容은 日本의 기술도입계약의 인가기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실 日本의 기술도입계약의 인가기준은 개발도상국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그 註書에 「인가기간의 특별인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중에 다음과 같은 제한조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 특별인가를 받으면 포함시킬 수 있는다 것을 明記하고 있다.

## 8. 關係機關

### (1) 管理機關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거시적으로는 嚴格하게 관리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방·활성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서 中國과 地方의 計劃管理의 責任이 조정된다.

#### ● 國家計劃委員會

국가계획위원회는 國務院의 계획책정 기구이며, 기술도입에 관하여는

① 기술도입에 관한 국가의 中·長期 및 연도계획을 책정하여 기술도입자금의 총규모, 자금이용분야와 중점을 결정하며, 한도액(현재는 500萬달러) 이상의 기술도입 실행가능성 검토와 심사 인가를 행한다.

② 各部門·省·市가 책정한 기술도입에 관한 계획안을 지도, 심사한다.

③ 조직, 조정공정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行政의 手段이나 經濟의 手段에 의해 計劃達成을 保證한다.

④ 計劃의 진행상황을 조사, 총괄한다.

#### ● 國家經濟委員會

國務院의 指導下에 국민경제를 조정, 관리하는 종합적 경제기관으로서, 기술도입분야에서는

① 국가계획으로 정해진 技術改造의 기술도입자금의 총액, 중점분야를 감안하여 기술도입에 따른 공업개조의 단기적 실시계획과 연도계획에 관한 策定과, 그 實施에 관한 監督調整을 행한다.

② 도입기술의 심사·인가·한도액 이상인 것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제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의 관계부문이 심사, 인가를 행하는데 한도액 이하인 경우는 국가경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심사, 인가한다.

③ 도입기술의 소화, 흡수에 책임을 지고 도입기술에 의한 기존기업개조의 정책과 그에 관련된 規定, 制度를 策定한다.

④ 도입기술에 의한 企業改造의 進展을 위하여 關稅率, 銀行金利 등의 경제조정수단을 결정한다.

⑤ 中小企業의 對外協力促進과 조정 지도를 행한다.

⑥ 專門家を 양성한다.

#### ● 對外經濟貿易部

국무원의 지도하에 대외무역분야를 관리하는 窓口部

門으로서, 기술도입에 관함서는

① 국가의 기술도입계획의 작성에 관여함과 동시에 關係部門에 의한 대외정책의 實行이나 기술도입계획의 實施를 指導한다.

② 국가의 정책, 法令에 의거하여 기술도입에 관한 法規나 管理規定을 制定한다.

③ 2國間, 혹은 다각적인 政府間의 기술도입에 관한 국제적인 協力을 조정한다.

④ 전국의 기술도입계약을 관리하며, 중점적인 기술도입계약을 심사하고 인가한다. 기타사항에 관한 심사인가에 대한 각급기관에의 위탁업무를 지도한다.

⑤ 各部門, 地方의 기술도입의 對外業務를 調整한다.

#### ● 其他

外資總額이 限度額인 501萬달러 이하인 것은, 主管中央各部門 혹은 國務院이 認可해준 海外開放都市 및 省이 契約를 認可한다.

이런 류의 인가기관은 대외경제무역부 技術進出口國외에 북경시(北京市)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등의 위원회, 河北省대외경제무역청 등의 廳, 또는 局과 같은 조직이 약 53개소가 알려져 있다.

### (2) 技術導入公司

상기란 바와 같은 기술도입에 관한 商談은 導入單位에서 위탁받은 對外貿易公司·投資公司·工業公司 또는 기타 기술무역공사가 실시하는데, 그 담당공사는 중국기술進口總公司, 중국국제신탁투자公司, 중국해외무역有限公司 등 약 36개의 公司가 알려져 있다.

### (3) 其他機關

#### ● 中國國際貿易推進委員會

機構의으로는 대외경제무역부의 감독을 받은 準民間機關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책임자는 大臣(장관)級이며,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海事仲裁委員會를 하부기관으로서 갖고 있으며, 廣州交易會를 주취하는 등, 海外貿易, 기술교류 면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 ● 日本側의 商談機關

일본국제무역추진협회와 中·日經濟協會가 대표적이다. 일본국제무역추진협회는 中·日 國交回復 이전부터 廣州交易會의 일본측 창구였으며, LT무역등 困難한 시대에 中·日交流의 中心의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측의 신뢰 역시 두텁다.

中·日經濟協會는 官界, 財界와의 연계관계가 강하며, 중공측에서도 공적인 사업은 中·日경제협회, 민간무역은 일본국제무역추진협회등으로 분리하여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